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정 2004.3.29 대통령령 제183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그 밖의 낙후지역)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3년마다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대상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6.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제2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제4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이라 한다)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시 중요 사항)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시·도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제9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보완시 중요사항)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혁신발전 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사업 추진체계의 변경

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

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①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 2. 사업목표의 달성도
-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중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과 수도권안의 폐기물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4.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공연시설·전시시설·도서관·지역문화복지시설·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관리하는 기관
- 5.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문화유적지·묘지·매립지·남북출입장소·방송시설·철도역·공항과

그 관련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기준 및 절차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인구밀도
-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

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학의 지방이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인구의 안정화·적정화,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도권 경쟁력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일괄 작성하여 매년 2

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을 제출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⑥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앞서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 및 그 체결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

보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계획 또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제21조 (위원회의 위원 등)

①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자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기획단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업무를 담당하는 1급상당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그 밖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혁신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협의회 위원을 위

촉하는 경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장 등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시·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 협의회, 분과협의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시·도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도 협의회와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 협의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구청장이 공동으로 시·군·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3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5조 (소속재산의 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당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수급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

제37조 (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제38조 (용자의 조건 등) ①법 제3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신청절차·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예산의 신청)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의 지원대상사업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중요도 및 지역 혁신협의회 심의 의견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0조 (예산의 요구)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내역·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사업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 (위원회의 의견통보) ①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중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총액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규모 및 보조비율의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 지역의 발전정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현황, 당해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의 교부시 해당 사업내에 수개의 경비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5조 (예산의 전용범위)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

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에 의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6조 (예산의 이월범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권한의 위탁)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을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을 임대하게 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매각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회계사무의 위탁)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9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용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용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46호, 2004.3.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별표 제7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④(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⑤(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한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